

##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

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(☎ 044-201-3832)

▶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

-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,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

▶ 이에,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### <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>

- ▶ 추진배경 :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
- ▶ 시행일 : 2014.2.7.